

2026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제1차 입주기업 모집 2차 연장 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3.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장



1. 모집개요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길 23(일도동)
- 선정규모: 0개사
- 입주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입주 계약 취소)
 - 신청자격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타 지역 창업보

육센터와 중복 입주도 불가)

*입주 시 반드시 본점이 입주해야 함

· 입주 제외 대상 업종(참고자료 참조)

※ 내부사정에 의거 인가·허가·등록 업종일 경우 입주가 불가할 수 있음

※ 여성기업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어야 함

○ 입주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에 한하며 미등록시 계약 취소

○ 지원내용

- 독립 사무공간(창업보육실) 및 기본 인프라(인터넷 전용선 등) 제공
- 공용시설 사용지원(화상회의실(전자칠판), 탕비실, 휴게실)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창업, 자금/회계, 인사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2. 입주공간 및 입주자부담금

○ 입주공간: 35~45㎡(10~12평, 전용면적) 내외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연장평가 후 2년 연장 가능)
- 부 담 금

구 분	보증금	월관리비(VAT 별도)	비고
금 액	1,500천원	10,000원/3.3㎡	부가세 10%

3.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
 - 2차: 발표심사(대표자 참석 필수)
 - 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 및 응답
- 결과발표: 개별통보
 - ※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계약일: 2026. 3~4월 예정
 - ※ 센터 사정에 따라 기간 조정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3.6.(금)
 - ※ 모집기간 내 접수 미달 시 수시로 추가 모집 진행
- 접수방법: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이메일: ghgang@wbiz.or.kr
 - 방문: 제주도 관덕로15길 23(일도동) 2층 사무실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필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해당자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예비창업자 해당) 1부 / 홈택스
 -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원(기창업자 해당) 1부 / 홈택스
 - 전년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 자료) 각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 대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 여성기업확인서 1부 (필수)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달 이내 발급 (필수)
 - 지식재산권 등 각종 인증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서류이나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서류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실적자료/해당자에 한함)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고용인원실적자료/해당자에 한함)
- 기타문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 전 화: 064-726-4467

[참고 1]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산업표준분류	업종	비고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관련 전업종	
부동산업	68~69	부동산 임대, 중개, 장비 및 기계 임대, 음반 및 비디오 등 임대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 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이용 및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 세탁 및 장례, 예식관련 서비스업 및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 등	산업용 세탁업 제외

< 산업표준 분류 >

- 55 숙박업(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일반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64 금융업(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68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69 임대업;부동산 제외(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참고 3]

제출 서류 목록표

구분	서류명	발급처	개수
입주신청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소정양식	1부
	대표자 이력서(사진포함)	자유양식	1부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부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예비창업자 해당)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원(기창업자 해당)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부
상시근로자 확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4대사회보험 토털 (www.4insure.or.kr)	택1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매출액 확인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날인 자료만 인정	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도 확인	신용보고서(신용점수 必)	신용정보조회 이용 (나이스, 올크레딧 등)	1부
	국세 납부증명 - 법인사업자 : 회사, 대표자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 대표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부
	지방세 납부증명 - 법인사업자 : 회사, 대표자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 대표자	관할 구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www.gov24.kr)	1부
기타증빙	지식재산권 보유 증명	각 발급기관	각 1부